

●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 규정

제정 1994. 1. 18 내무부훈령제1100호
 개정 1995. 3. 8 내무부훈령제1134호
 개정 2000. 4. 24 행정자치부훈령제49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는 선박이거나 앞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선박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리권을 위임받아 보유하는 선박(이하 “관공선”이라 한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동력원이 설치된 관공선에 적용한다. 다만, 관공선에 탑재되어 있는 선박은 제외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관서”라 함은 차상급관서의 장이 되며 최종적인 총괄관서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
2. “보유관서”라 함은 관공선이 소속된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3. “사용관서”라 함은 관공선을 직접 관리하고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집중관리) 관공선을 2척이상 보유한 관서는 배선, 승무원관리, 유류수불, 수리, 정박지 등 관공선에 관한 제반업무를 집중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관서가 각기 다르거나 정박지가 원거리에 떨어져 있고 업무의 성질상 집중관리가 불필요한 관공선은 업무의 일

부 또는 전부를 사용관서에 위임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관공선 보유 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의 관공선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하고 사용관서에서는 관공선 승무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공선 관리계획에는 관공선별로 운항사항과 유지관리 예산집행사항 및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사항과 예방장비·수리사항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 (운항명령) ①관공선의 사용관서는 관공선을 행정목적에 사용코자 할 경우 당해 관공선 선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공선 운항 명령서를 매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과 업무의 성질상 매회 교부가 어려운 관공선은 월간으로 일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부받은 관공선의 선장은 관공선 운항 명령서에 따라 관공선을 운항하여야 한다.

제7조 (운항일지 작성)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항중인 관공선과 미운항 정박중인 관공선의 선장은 관공선 항박일지, 기관부일지, 운항일지를 매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 (비치서류) 관공선 사용관서와 선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항박일지(별지 제2호서식)
2. 기관부 일지(별지 제3호서식)

3. 운항일지(별지 제4호서식)
4. 장비 및 비품대장(별지 제5호서식)
5. 관공선 수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6. 승무원 직무분담표(별지 제7호서식)

제9조(승무원 소요인원) 관공선 승무원의 소요인원수 상한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제10조(선명부여 및 선택표시) 관공선의 선명부여 및 선택표시방법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보유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안전설비 확보) ①바다에서 운항하는 관공선의 안전설비는 별표3의 기준에 의하여 안전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내수면에서 운항하는 관공선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설비를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조정하여 확보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수칙) ①관공선 사용관서와 선장 및 승선자는 별표4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공선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책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1차 책임 : 선장(당해 승무원 포함)
2. 2차 책임 : 담당부서의 계장(계장이 없는 경우는 과장)
3. 3차 책임 : 선박사용관서의 장

제13조(건조계획 수립) ①관공선 보유관서는 익년도 관공선 건조 계획을 매년 9월30일까지 수립하여 시·군·자치구

의 경우는 시·도지사에게 시·도의 경우는 시·군·자치구를 포함하여 10월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선 건조계획을 취합하여 관공선의 신규건조 및 대체건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재원대책을 강구하여 익년도 관공선 건조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14조(승무원 교육훈련) ①관공선 보유 관서는 매년 1월31일까지 당해연도의 관공선 승무원에 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연 2회이상 자체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은 안전운항·화재예방과 진화·각종장비 취급요령·유해작업시 안전요령·조난구조·식중독·폭발물 안전취급·해상충돌시 대책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공선 승무원에 대한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계류장 관리) 관공선 보유관서는 관공선이 정박하여 운항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하고 계류장내에서의 선박 안전정박과 유지관리 및 승무원의 복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6조(보험 및 공제가입) ①관공선 사용관서는 공무원이 아닌자의 승선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승선자를 대상으로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선

박의 경우는 지방관공선 공제기급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선자 보험에 가입해야 할 대상은 도선·환자후송선·병원선·행정선으로서 도선기능을 수행하는 관공선에 한한다.

제17조(실태점검) ①관공선 총괄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하기관의 관공선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공선에 대한 관리실태점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행정자치부 : 연 1회 이상
2. 시·도 : 연 2회 이상
3. 시·군·자치구 : 월 1회 이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점검은 선박운항·계류장관리·승무원복무·안전관리·선박정비 및 수리·교육훈련 등 관공선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1994. 1.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 3. 8)

이 규정은 '94. 12. 30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법률 제4789호)의 시행일과 같이 한다.

부 칙 (2000. 4.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